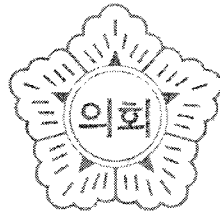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 228 회 임시회  
[ 2019.3.7.(목)10:00 ]

#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 목 차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1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21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2월 22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2월 25일

## 3. 제안이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안 제4조)
- 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안 제5조~제8조)
- 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이용료  
(안 제9조~제10조)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제5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2019. 1. 3. ~ 2019. 1. 23.(의견제출 없음)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진로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의 경우, 청소년 즉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시설 설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는 규정과, 「진로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청소년기본법	진로교육법
<p><b>제3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p>	<p><b>제18조(진로체험 지원)</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또한, 안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부터 제8조(지도·감독)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진로체험기관의 자원 발굴·데이터베이스 구축·학교와의 연계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협력 등의 진로교육 지원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센터 조직 및 전문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그리고 사업의 이행여부 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음.

- 특히나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만 사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13. 5월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비는 서울시교육청과 마포구가 각각 부담 <표 1> 하고 있음.

<표 1>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비고
예산액(사구비)	239,614	320,000	322,500	위탁경비
시비	115,000	120,000	122,500	
구비	124,614	200,000	200,000	

-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직영 4개, 위탁 21개) 중에 있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 유사 조례는 10개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별첨>

○ 계속해서, 안 제9조(이용대상)부터 제10조(이용료)의 경우, 이용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표 2> 과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주민으로 하고 이용료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무료로 정하였음.

〈표 2〉 마포구 학교 현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학교	대학교	학력인정학교
52	22	14	9	2	2	3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고 학생들이 진로체험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개선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이어 2018년 자유학년제를 5개교 시범실시하고 2019년부터 14개교 전체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자 직업체험을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7. 기타자료(비용추계서, 참고자료, 관계법령)

### 가. 비용추계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 2. 비용추계의 전제

-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포구-서울시교육청 간 협약 체결(2017. 3. 1.)에 의거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교육청비 40%, 구비60%)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 비용추계기간 : 2019. 1. ~ 2023. 12. (60개월)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비 보조금	122,500	122,500	125,000	127,500	130,000	627,500
	구비 보조금	200,000	202,500	205,000	207,500	210,000	1,025,000
	소계(b)	322,500	325,000	330,000	335,000	340,000	1,652,500
□ 총 비용(a-b)		322,500	325,000	330,000	335,000	340,000	1,652,500

※ 인건비 상승분(연도별 소요예산의 1.5%) 반영

### 4. 재원조달 방안

- 마포구와 서울시 교육청 협약에 의해 구비 및 서울시 교육청비 지원

###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이기연
연락처	02-3153-8952

나. 참고자료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설치근거 : 마포구-서울시교육청 간 협약체결('13.5.24.)
- 시설현황 : 98㎡(사무실 및 상담실 2개) 마포중앙도서관 5층
- 사업비 : 322백50만원(구비 200백만원, 시비 122백50만원 , )
- 위탁체 : (사)한국청소년재단( '13.6.1 ~ '19.3.31.)
  -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2019.1.21.~2.20.)
  - ▽ 위탁현황
    - '13. 6. 10. ~ '14. 2. 28. (사)한국청소년재단
    - '14. 3. 1. ~ '15. 2. 28.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 '15. 3. 1. ~ '16. 3. 31.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 '16. 4. 1. ~ '19. 3. 31.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 인력운영 : 5명(센터장외 4명)
- 예산사항

(단위 : 천원)

예산액	2017년	2018년	2019년
총액	239,614	320,000	322,500
시비	115,000	120,000	122,500
구비	124,614	200,000	200,000

□ 지도 감독 현황 : 마포구와 서울시교육청 개별 지도·감독

구분	마포구	서울시교육청
점검시기	연1회	연2회(상·하반기)
점검범위	예산, 회계, 물품관리, 복무, 사업추진	예산집행, 운영효율성
점검자	사업담당팀장 및 담당자	교육지원청 장학사, 담당자
점검방법	관계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	관계서류 확인 및 현장 방문 점검
점검실적	조치 7건	2016년 교육청 주관 우수센터 선정



□ 조례 제정 현황 : 서울시 타 자치구 유사 조례 10건

###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제정일자	비고
1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5. 15.	위탁운영
2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4. 23.	위탁운영
3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5. 6. 11.	위탁운영
4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6. 22.	위탁운영
5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6. 12. 8.	위탁운영 의원발의
6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6. 29.	위탁운영
7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2017. 8. 2.	의원발의 위탁운영
8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0. 12.	위탁운영
9	중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1. 1.	위탁운영
10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8. 5. 10.	위탁운영

## 다. 관계법령

### ○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9조(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및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직업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센터업무의 위임·위탁)**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